

【논문】

## 淸 中期 만주족장의 니루(牛錄) 관리\*

김 준 영\*\*

### Ⅰ 차 례 Ⅱ

- I. 머리말
- II. 청조의 만주족장 선발
- III. 만주족장의 공적 임무와 권한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만주 공동체가 팔기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 기층 사회조직은 팔기의 기본 단위인 니루(niru, 牛錄)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 니루에는 니루의 수장인 좌령 이외에 각 무쿤을 대표하는 족장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팔기에 입적한 후 만주족장의 역할에 대해 기존 연구는 주로 족보자료를 이용해 족장의 제사 주관, 재산 관리, 족보 편찬, 양자 문제 관리 등 족장의 종족 활동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다루었다. 만주인은 모두 팔기(八旗)에 속한 기인(旗人)이기 때문에 족장의 역할에서 팔기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 선행연구는 민인족장과 차별성 및 팔기로 편성된 후 만주족장의 역할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본고는 청대 만·한문 당안을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민인족장과 차별된 특징 및 만주족장이 니루에서 담당한 공적인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만주족장 선발에서 보이는 특징은 민인족장과 달리 종족 내부의 자체적 결정이 아닌 청조의 규정에 따라 족인 중 관직이 높은 자를 족장으로 선발하였다는 점이다. 청조가 만주족장의 관직 경력을 중요시 한 이유는 족장이 니루에서 팔기의 공적 임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만주족장이 니루에서 맡은 공적 임무로 그들은 정식 관원이 아니지만 팔기 관리들

\* 본 논문은 2020년 전남대-만주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아시아의 다문화공동체와 만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 충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과 함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또한 만주족장의 공적 임무는 주인이 팔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주제어: 팔기, 니루, 종족, 만주족장, 족장의 역할, 족장의 경제권

## I. 머리말

滿洲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지칭하는 地名으로 익숙하지만 청대에는 팔기에 입적한 旗人을 지칭하는 말로 漢人과 구분되는 집단의 명칭이었다. 청대 만주인에 대한 범주에 대해 학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최근 연구 성과에서 보이는 추세는 만주인의 種族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쓰이는 ‘만주인’의 개념은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팔기에 포함된 多種族 공동체를 의미한다.<sup>1)</sup> 만주인이 팔기에 입적하기 전의 기본 사회 단위는 만주어로 ‘무쿤(mukūn, 穆昆)’ 혹은

1) 만주공동체 범주 대해서는 학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王鐘翰과 徐凱 등은 만주공동체는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몽골인, 한인 그리고 조선인까지 포함되는 다민족 공동체로 규정하였다. 王鐘翰, 1987, 「關於滿族形成中的幾個問題」, 『社會科學戰線』 1; 徐凱, 2015, 『滿洲認同“法典”與部族雙重構建：十六世紀以來滿洲民族的歷史嬗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등 참고. 이에 반해 마크 C.엘리엇(Mark C.Elliott), 孫靜, 張佳生 등은 만주공동체를 여진의 후손과 몽골인으로 한정하여 만주공동체 중 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마크 C.엘리엇(Mark C.Elliott), 이훈·김선민 역, 2009, 『만주족의 정체국(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푸른역사; 孫靜, 2005, 「滿族形成的再思考——清中期滿洲認同意思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張佳生, 2010, 「八旗牛錄建制與滿洲之民族整合」, 『瀋陽故宮博物院院刊』 10 참고; 이 밖에 杜家驥는 그의 논문「清代滿族與八旗的關係及民族融合問題」(『社會科學戰線』 6, 2016)에서 만주인의 범주는 단순히 民族旗分으로 구분할 수 없고 그들이 滿洲缺의 관직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로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만주공동체 형성시기에 관해서는 만주공동체의 구성을 여진, 몽골, 동북 변경 지역의 種族으로 한정하였던 마크C.엘리엇(Mark C.Elliott) 등은 ‘만주’라는 명명에서 민족정체성이 이미 형성되고 팔기를 통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王鐘翰, 張傑, 張丹卉, 郭孟秀, 파멜라 크로스리(Pamel K.Crossley) 등은 만주공동의 정체성이 여진과 주변의 여러 민족을 통합한 후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王鐘翰, 2003, 앞의 논문; 張傑·張丹卉, 2003(2013재판), 『清代東北邊疆的滿族(1644-1840)』, 遼寧民族出版社; 郭孟秀, 2010, 「試論滿族共同體形成初期的文化多元成分」, 『滿族研究』 2; 徐凱, 2015, 앞의 책; 파멜라 크로스리(Pamel K.Crossley), 陳兆肆 譯, 董建中校, 2016, 『孤軍：滿人一家三代與清帝國的終結(Orpha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 New Jersey)』, 人民出版社, 19쪽 참고. 이상 연구성과를 종합해볼 때 만주공동체의 범주와 정체성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현재의 관점에서 만주의 범주를 현재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어느 한 시점에 일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범주 또한 유동적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만주 공동체의 특징에 착안하여 ‘만주’를 여진의 후손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주했던 제(諸) 종족이 상호 융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가산(gašan, 嘎山)’으로 불리는 집단이었다. 무쿤은 동성 혈연집단인 할라(hala, 哈拉)가 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지연을 기반으로 하는 씨족 집단을 의미한다. 가산은 향촌 혹은 촌락을 의미하는데 가산에는 동성 무쿤 혹은 이성 무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무쿤과 가산에는 각각 조직을 통솔하는 수장이 있는데 무쿤의 수장을 만주어로 무쿤다(mukūn i da, 族長)라고 하였고 가산의 수장은 만주어로 가산다(gašan i da, 村長)라고 하였다. 만주 공동체가 팔기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기층 사회조직은 팔기의 기본 단위인 니루(niru, 牛錄)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도 니루에는 니루의 수장인 니루어전<sup>2)</sup> 이외에 각 무쿤을 대표하는 족장이 여전히 존재해 있었다. 심지어 동북 일부 지역에는 민국시대까지 무쿤다(족장)제도를 유지하였다.<sup>3)</sup>

기존 만주족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족보자료를 이용하여 족장의 제사 주관, 족산 관리, 족보 편찬, 양자 문제 처리 등 족장의 종족 내부 활동 주관과 종족 관계 유지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sup>4)</sup> 그러나 선행연구는 민인족장과의 차별성 및 팔기에 입적한 후 만주족장의 선발과 역할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청대 만·한문당안을 통해 만주족장이 니루에서 맡은 역할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민인족장과 차별된 만주족장의 특징, 그중 팔기에 입적한 후 만주족장이 니루에서 담당한 공적인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 연구하겠다.

2) 니루의 수장은 만주어로 니루어전(niru ejen, 牛錄額真), 漢語로는 좌령(佐領)이라고 한다. 이하 좌령으로 표기.

3) 『民族問題五種叢書』 遼寧省編輯委員會, 2009, 『滿族社會歷史調查』, 民族出版社, 40쪽.

4) 謝肇華, 1993, 「從一份“家訓”看清後期滿族的族長制」, 『滿族研究』 1; 何海龍, 2002, 「清代滿族民間宗法制度基本形態淺析」, 『滿族研究』 4; 馮爾康, 2008, 「清代宗族族長述論」, 『江海學刊』 5; 陳瑞, 2008, 「清代徽州族長的權力簡論」, 『安徽史學』 4; 이매뉴얼C.Y.쉬, 조운수 서정희 역, 2013, 『근현대중국사-상: 제국의 영광과 해체』, 까치, 93쪽; 馮爾康, 2013, 『中國古代的宗族和祠堂』, 商務印書館, 113-115쪽; 徐雪梅, 2018, 「清朝八旗制度中的族長」, 『人民論壇』 2; 常建華, 2017, 「有關明清家族制的是是非非」, 『古代文明』 2, 142-144쪽.

## II. 청조의 만주족장 선발

청조 통치자는 기층조직인 가산 혹은 무쿤을 팔기의 기본단위인 니루로 편성하여 만주 공동체의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무쿤 혹은 가산은 집단의 규모에 따라 단독 니루 혹은 복수의 니루로 편성되었다. 규모가 작은 집단은 여러 무쿤이 결합되어 하나의 니루로 편성되었다. 니루의 수장인 좌령은 주로 팔기에 입적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기존의 족장 혹은 가산다가 맡았고 좌령직은 주로 직계 자손들에게 세습되었다.<sup>5)</sup> 따라서 입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무쿤의 족장은 니루의 좌령과 무쿤의 족장을 겸하거나 따로 족장을 두었다. 또 다양한 무쿤 집단이 하나의 니루로 편성된 경우에도 좌령 이외에 본래 무쿤의 족장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청조는 만주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해 각 니루의 족장을 단순한 혈연집단의 수장으로 보지 않고 족장 선발과정에 개입하였다. 먼저 황제의 혈육인 종실 족장의 선발은 일정한 관품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후 황제의 리툼을 거쳐 임명하였다.<sup>6)</sup> 종실 이외에 일반 만주족장은 황제의 리툼을 거쳐 임명되지 않았지만, 만주족장도 민인과 달리 종족에서 자체적 선출이 아닌 소속 니루의 좌령 및 팔기 관원의 추천과 보증을 거쳐 선발하였다.

족장을 임명하는 것은 모두 니루의 좌령이 직접 뽑고 팔기 도통에게 알려서 임명하게 합니다……; (니루를)살피고 관리하는 것은 소속 니루 장경, 족장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진실로 니루의 좌령, 족장은 황제의 본래 두터운 은혜와 인자한 생각에 삼가 따라서 성실하게 임무에 임하고 (족인을)교화하는데 노력을 다해 각자 본분에서 반드시 얻는 바가 있게 해야 합니다. 청하건대 이후 족장을 선발할 때 니루 마다 큰 무쿤 작은 무쿤 모두 두 명씩 족장을 두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 적은 무쿤에서 사람을 얻을 수 없으면 니루 안에서 2-3무쿤을 합해 선발하여 임명하게 해주십시오. 니루에서 또한 얻지 못하게 되면 잘란에서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족장을 선발할 때 현직 4품 이상의 무관이 (후보로)뽑히지 않게 하는 것 이외에, 지금 니루를 관리하지 않는 문관 대신 및 관원, 직무에서 물러난 대신 및 관원, 공무에서 면직된 대

5) 청대 좌령직을 세습하는 좌령을 일반적으로 世管佐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좌령직을 세습하지만 좌령을 구성하는 구성원에 따라 勛舊佐領, 優異世管佐領으로 구분된다. 世管佐領은 주로 동족으로 구성된 좌령을 의미한다. 勳舊佐領은 공신의 노복 혹은 상으로 받은 노복들로 편성한 좌령으로 공신 집안이 좌령직을 세습하는 경우이다. 優異世管佐領은 공으로 호구를 받아 만든 좌령을 의미한다. 張佳生, 2010, 「八旗牛錄建制與滿洲之民族整合」, 『瀋陽故宮博物院院刊』 10, 7-8쪽.

6) 김준영, 2020, 「淸朝의 종실족장 선발과 족장의 종실사회 관리」, 『만주연구』 30, 48-53쪽.

신 및 관원, 나이가 있는 생원, 거인, 진사 등 학문에 약간 통달한 閑散들 중에서 과오가 없고, 소박하고,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 (족인을) 가르치고 격려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을 무쿤 전체에서 보증하여 선발하고, 니루의 좌령에게 속하게 합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생계, 품행(행동)을 알지 못한 바가 없습니다……족장이 (족인을) 처벌하기 때문에 품급(品級)이 없으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품급이 있는 자 이외에 품급이 없는 자들은……규정에 따라 虛銜을 상으로 내려 지위를 높여주고 (推崇) (그들이 족인을) 관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朱批 : 이 주점은 아주 상을 내릴만한 하다. 팔기의 대신들은 다시 함께 서둘러 논의한 후 보내라.<sup>7)</sup>

이상 응정제 시기 서더(sede, 塞得)의 주점에서 “(니루를)살피고 관리하는 것은 소속 니루 장경, 족장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에서 보듯 족장의 역할은 니루 좌령과 더불어 니루의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관속 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만주 족장의 선발은 니루의 좌령이 직접 선발한 후 팔기 도통에게 보고하여 임명하였다. 족장의 선발 대상에 대한 조건은 품행이 단정하고 니루에서 교화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은 물론, 이상 나열된 구체적인 조건을 통해 볼 때 현직에 있거나 관직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족장이 (족인을) 처벌하기 때문에 품급(品級)이 없으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품급이 있는 자 이외에 품급이 없는 자들은 ……규정에 따라 虛銜을 상으로 내려 지위를 높여(推崇)주고, (그들이 족인을) 관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에서 보듯, 족장이 족인을 관리하기

7) 檔號:04-02-002-000194-0047, 無題, 戶部侍郎覺羅 塞得,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mukūn i da sindahangge gemu nirui janggin jorime tucibufi, gūsa be kadalara ambasa de alafi sindambi……, baicara kadalarangge nirui janggin, mukūn i da de ambula holbobuhabi, unenggi nirui janggin, mukūn i da, enduringge ejen i da jiramin i kesi gosingga gūnin de gingguleme acabume, hing seme baita obufi tacibume wembume faššame yabuci, meni meni banjire teisu urunakū bahaci ombi, bairengge ereci amasi, mukūn i da sonjoro de niru tome ambakan mukūn, buya mukūn, gemu juwete mukūn i da sindareo, niyalma komso mukūn de, niyalma baharakū oci, nirui dorgi juwe ilan mukūn acafi sonjofi sindareo, nirui bade geli baharakū oci, jalan i baci sonjofi gaireo, ere sonjoro de tušan bisire duici jergi coohai hafasa ci wesihun gairakūci tulgiyen, ne niru bošohakū bithei ambasa, hafasa, tušan ci nakaha ambasa, hafasa, siden I baita de efulehe ambasa, hafasa se bisire šusai, gioi zin, jin ši sa, bithei jurgan be majige ulhire sula urse, endebuku akū gulu nomhon, yabun tob niyalma be tacibume huwekiyebume kadalame muterengge be, mukūn i gubci akdulame sonjofi, nirui janggin de kancibufi, mukūn falga be dahame, ishunde banjire were, gūnin, yabun sarkū sere ba akū, …… mukūn i da be weile arara be dahame, jergi akū oci kadalara de mangga, jergi bisire ci tulgiyen, jergi akū urse be……, kooli songkoi untuhun jergi šangnafi wesihuleme kadalabureo.

朱批 : ere wesimbuhengge ambula saišacuka jakūn gūsai ambasa jai kancime hūdun gisurefi yabubu.

위해서 그것이 낮은 품급 일지라도 공적인 지위를 통해 족장이 위엄을 갖추는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조는 만주족장을 선발할 때 먼저 무쿤 내부에서 관직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임명하고, 만약 무쿤에 관원이 없는 경우에는 護軍, 領催, 披甲 중에서 연장자를 살펴서 족장에 임명하게 하였다.<sup>8)</sup> 만주족장 선발에서 관품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임명하게 한 정책은 건륭제 때 이르면 동북 변방의 신만주 족장 선발까지 확대되었다.

#### 주접한 것.

닝구타 등의 곳을 수호하는 장군 대신 오미다(omida, 鄂彌達) 등이 삼가 주접한 것, 가산의 수장 무쿤의 수장을 선발 및 임명해서 옛 풍습을 되살리게 하고 근본을(根源) 공고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조사하였는데 길림 올라성을 건립하기 이전에 각종 만주인들은 모두 가산, 장원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두머리 중 명망이 있는 자를 가산의 수령, 족장으로 삼았고 가산의 사람을 관리하고 교화시켰습니다……지난 몇 년간 永吉州를 건립하였는데 민인들이 모여왔고 만주인은 민인이 원래 살던 곳에 들어와서 (호구를) 많이 등록하였습니다. 또 (자식들이) 태어나서 점점 궁핍해졌고 집안의 재산을 민인에게 팔고 성의 밖10-20리에서 2-300리의 촌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신과 관리로부터 멀어져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임의로 편의를 추구해 떠나갔고 계다가 또 제멋대로 이름을 드러내어 몇몇은 가산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신들이 현재 가산자들을 자세하게 조사하였는데 sabsituXX, 노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또 閑散의 자제, 家奴 등을 데려와 (가산의 수령에)임명한 것도 있습니다……이러한 자들이 가산에 있게 된 후 만주인들의 옛 풍습이 심히 파괴되어 부끄러움을 모두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논의하여 지금 이미 가산의 수령, 족장에 있는 만주인 중에서 평소 품행이 뛰어난 자들은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그만두게 합니다……이 자리에 공무에 연루되어 퇴직한 관원, 領催, 피갑 등 중에서 명망이 있고 품행이 바른 자들을 선발하여 協領, 니루의 좌령, 효기교 등의 보증을 받아 가산의 수령, 족장에 임명합니다. (이들이) 가산의 만주인 또는 가산에 흠어져 살고 있는 민인을 관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sup>9)</sup>

8) 檔號:04-02-002-000179-0005, 無題, 滿洲鑲黃旗副都統 吳禮, 雍正 12年(1734) 8月 20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mukūn de aika hafan akūngge oci ini mukūn i dorgide bayara bošokū uksin sei dolo unggajalan be tuwame sindambi.”(“무쿤에 만약 관원이 없으면 그의 무쿤 안에서 호군, 領催, 피갑 등 안에서 長輩를 살펴서 임명합니다.”)

9) 檔號:03-0170-0028-007, 奏請選任族長張恢復舊例折, 寧古塔將軍鄂彌達, 乾隆6年(1741) 12月 11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wesimburengge.

이상 닝구타 장군 오미다(omida, 鄂彌達)의 주점에 의하면 길림 올라 지역의 만주인들은 본래 가산이나 장원을 단위로 거주하였고 가산다 혹은 족장이 이들을 관리하였다. 청초 동북초민정책이 시행되어 이곳에 永吉州 등 민인 거주구역이 개발되자 만주인들이 민인 거주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만주인의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활이 궁핍해진 만주인들은 성내 자산을 팔고 성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가산다 및 족장이 성 외곽으로 이주한 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외곽으로 이주한 자들은 임의로 족장 혹은 가산다를 선출하여 생활하였다. 청초가 외곽지역 가산다와 족장의 출신을 조사하였는데 노비 출신 등 가산다와 족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 많았다. 청초는 성 외곽으로 이주한 만주인을 교화시키고 관리하기 위해 기존 임의로 선출한 가산다와 족장 중 부적합한 자들을 모두 물려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퇴직 관원, 領催, 披甲 중에서 품행이 올바른 사람들을 선발해 팔기 관원들의 검증과 보증을 거쳐 새롭게 임명하였다.

병부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입니다. 의정대신 겸 화석유친왕 광록 등이 의논하였습니  
다. 닝구타 장군 오미다(omida, 鄂彌達)가 주점하여 청하길, 길림의 둔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성에서 비교적 멀리 있어 좌령과 효기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합니다. 가산  
다, 族長을 두었는데 대다수가 범법자, 노비 혹은 한산기인, 가노로 채워졌습니다. 청  
하 건대 품행이 단정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물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자리에 공무에 연루되어 퇴직한 관원, 領催, 披甲 내에서 선발하여, 형령 등이  
보증하여 임명하게 해주십시오. 관리를 잘하여 상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헤아

---

ningguta i jergi babe tuwakiyara jiyanggiyūn amban omida sei gingguleme wesimburengge, gašan i da mukūn i da be sonjome sindafi an kooli be dahūbufi fulehe da be akdun obure be baire jalin, baicaci girin i ulai hodon ilibure onggolo hacingga manjusa gemu gašan tokso de tembihe dalaha urse derengge urse be gašan i da mukūn i da sindafi gašan i urse be kadalame tacihiyame ofi……, ere udu aniyai sidende yung gi jeo ilibuhaci irgese bombonome isanjifi manjusa nikan i daci de dosifi umesi ejehe dade banjirengge cun cun i yadafi, boo hethe be irgese de uncafi hoton i tule juwan orin ba ci juwe ilan tanggū bade toksorome tehebi, ede ambasa hafasa ci aldangga kadalame jafatara niyalma akū ofi. cihai jirgara be bodome yabure dade geli ainame ainame gebu gaimme udu gašan i da sindahabi, amban be ne sindaha gašan i da sabe narhūšame baicaci sabsitu(XX) ahasi kejine bi, ereci tulgiyen geli sula juse booi ahasi be ton gaimme sindahangge inu bi……, ere jergi urse be gašan i da sindahaci ebsi manjusai an tacin umesi efujefi girure yertere be gemu sarakū de isinahabi, erebe hahilame tuwancihiyarakū oci ojarahū ofi, amban be narhūšame akūmbume hebdefi, ne gaiha gašan i da mukūn i da i dorgi manjusa an i ucuri niyalma yabun kemuni derengge ningge be bibureci tulgiyen funcengge be gemu nakabufi……, ese i oronde siden i baita de ušabufi nakabuha hafasa bošokū uksini dorgici niyalma derengge yabun tob sere urse be sonjofi gūšai da nirui janggīn funde boxokū sabe akdulabufi gaxan i da mukūn i da sindafi gašan I manju jai gašan de samsime tehe irgese be kadalame tacihiyabuki.

려 상을 내립니다. 이른바 퇴직 관원의 원직 복귀, 領催, 披甲을 효기교가 되게 하는 것이 과도한 우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퇴직 관원에게 요행을 열어주고 병정들이 승진을 정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히 행할만합니다. 이에 따랐다.<sup>10)</sup>

이상 병부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을 검토해보면, 닝구타 장군 오미다(omida, 鄂彌達)의 요청에 따라 외곽지역에서 임의로 선출된 가산다와 족장을 새롭게 선출하게 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족장이 된 자들 가운데 성과를 낸 족장에게는 그들의 공적을 헤아려 면직된 관리는 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領催, 披甲은 각각 효기교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상 청조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주족장 선발에서 종실 족장처럼 황제가 직접 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팔기 사회 治理에서 만주족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주족장의 선발 또한 종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조정의 영향력 하에 두었다. 만주족장의 선발대상은 종실처럼 고위 관직자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족인 중 관품이 높은 자를 우대하여 후보로 선출하게 하였고 좌령, 효기교, 협령 등 해당 니루의 팔기 관원이 함께 검증하여 선발하였다. 만주족장 선발에서 보이는 규정 및 청조 통치자의 개입은 민인족장의 선발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민인족장의 선발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민인족장은 대부분 농민 출신이 많았고 관직이 있더라도 高官은 적고 대부분 小官이거나 功名이 있는 자였다.<sup>11)</sup> 그리고 민인족장은 대부분 관직에 오르기 전이나 퇴직한 후 족장을 맡았다. 민인족장 선발 방식은 종족 회의를 통해 연령과 品德을 갖춘 자를 선출하였고, 일정한 임기 내에서 족장의 권력은 族規와 族人會의 제약을 받았다.<sup>12)</sup>

10) 『清高宗實錄』卷161, 乾隆 7年 2月 28日:“兵部議覆. 議政大臣和碩裕親王廣祿等會議. 寧古塔將軍鄂彌達奏稱, 船廠屯莊居住人離城較遠, 各佐領, 驍騎校鞭長莫及, 設有屯長, 族長多系黥奴或以閑散人丁, 家仆充數, 請挑留素行尚端者, 余俱革退, 所遺名缺, 請於因公掛誤廢員及領催披甲內揀選, 令協領等具保補放, 應如所請有管教好者, 酌量獎勵, 所稱廢員以原職用, 領催, 披甲以驍騎校用之處, 不惟過優, 且啟廢員僥幸, 致兵丁升階壅滯礙不, 可行. 從之.”

11) 본문에서 언급한 만주는 종족적 근원이 다양한 집단이 팔기에 포함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인족장(民人族長)은 팔기에 포함되지 않은 漢人을 의미한다.

12) 馮爾康, 2012, 「清代宗族的社會屬性—反思20世紀的宗族社會批判論」, 『安徽史學』, 2, 99-102쪽.

### III. 만주족장의 공적 임무와 권한

#### 1. 족인 戶口등재와 신분보증

팔기는 니루를 단위로 효기교, 領催, 피갑, 양육병 등의 명액을 배분하였다. 또한 청조가 기인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니루를 단위로 배분되었다. 따라서 각 니루의 旗籍에 등재되는 것은 팔기의 명액을 얻고 각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기인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팔기의 民族旗 구분(만주, 몽고, 한군기), 旗色, 니루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따라서 하층 기인 혹은 민인들은 팔기의 혜택을 얻기 위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법으로 旗籍에 등재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청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니루의 人丁 등록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였다.

정황기의 監察禦史 푸서너(fusene, 富色訥)가 주접한 것……팔기의 開戶 가노들이 속여서 교활하게 행하는 등의 여러 폐단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청하건대 어전(황제)께서 팔기의 일을 처리하는 대신들에게 유지를 내려 開戶 기인들의 무쿤을 분별한 후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민인의 자식들은 분별하여 민적에 포함시킨 후 관리가 되게 합니다. 捐納 해서 감생으로 뽑혀 호군이 된 사람들은 모두 엄중하게 조사하여 파직시켜주십시오. 만약 각 소속 기의 대신, 참령, 니루의 좌령, 효기교, 小領催, 족장 등의 비호를 얻어 (그 사실을) 감추다가 훗날 開戶의 노예들이 관직, 호군에 있는 폐단이 드러나면 소속 관리, 대신, 참령, 니루의 좌령, 효기교, 小領催, 족장 등 모두 해당 부에 명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청합니다. 이후 開戶 기인들의 무쿤을 분별하여 민인의 자손이 기인으로 인정되는 바를 영원히 금지하게 해주십시오……이러한 연유로 삼가 주접하였습니다. <sup>13)</sup>

13) 檔號 : 04-02-002-000119-0003, 「奏請嚴查開戶者之中認族居官協民之而入冊居官協納監生XX護軍者皆罷職事」, 正黃旗監察禦史 富色訥, 雍正 3年 1月 12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gule suwayan i baicame tuwara hafan fusene wesimburengge……, jakūn gūsai dangse faksalaha booi ahasi, jalidame koimasitame faksidame yabure jergi jemden be geterembure be baire jali n……, bairengge enduringge ejen jakūn gūsai, gūsai baita be icihiyara ambasa de hese wasimbufi, dangse faksalaha urse i dorgi mukūn takafi, hafan oho, irgen i jui seme takafi, irgen i dangsede dosimbufi hafan oho, aisilame giyan šeng jafaha, bayara oho urse be gemu ciralame baicabufi nakabubureo, aikabade meni harangga gūsai ambasa, jalan i janggin, nirui janggin, funde bošokū, ajige bošokū, mukūn i da derencume haršame gidame daldafi tuciburakū ofi, amala dangse faksalaha ahasi, hafan bayara de bisire jemden tucinjici, harangga kadalara ambasa, jalan i janggin, nirui janggin, funde bošokū, ajige bošokū, mukūn i da be suwaliyame gemu harangga jurgan de afabufi ujeleme weile arabuki, ereci amasi dangse faksalaha urse mukūn takara, irgen i jui seme takabure babe enteheme fafularao……, erei jalin

開戶는 팔기 중 본래 家奴의 신분이었던 자가 家奴 신분에서 벗어나 일반 기인이 된 사람이다. 開戶는 가노의 신분을 벗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正身 기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開戶기인은 팔기에 입적한 시기에 따라 新·舊開戶 기인으로 구분되는데 입관 전 팔기에 포함된 舊開戶 기인은 팔기의 명액을 얻어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반면 입관 후 팔기에 입적한 新開戶는 같은 開戶 기인이지만 원칙적으로 팔기의 명액을 얻을 수 없었다. 옹정제 때 이미 일부 新開戶 기인이 관직을 점유하는 폐단이 발생하자 청조는 만주 공동체 내부의 계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개호 기인의 신분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였다. 개호 기인의 신분에 대한 검증과 함께 청조는 만주인이 양자를 들이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하였다.<sup>14)</sup> 이는 향후 세습직 및 팔기 전랑 등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宗族 내부의 갈등 및 正身 기인의 정당한 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旗籍에 등재되는 것이 그 차제로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청조는 수차례 기인의 호구를 검증하게 하였고 또 등록하는 과정에서 엄밀히 살피게 하였다. 기인을 팔기 호적에 등재하고 그 신분을 보증하는 임무는 족장이 맡았는데 보증하는 방법은 족장이 좌령에게 제출하는 戶口冊과 족보를 통해서였다. 현재 중국제1역사당안관에 소장된 『清代譜牒檔案』을 보면 청대 족장에 의해 작성된 팔기 호구책의 기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gingguleme wesimbuhe. hūwaliyasun tob i ilaci aniya aniya biyai juwan juwe.

14) 檔號 : 03-0171-0206-016, 「奏請令防禦佛柱來京質問家譜緣由折」, 寧夏將軍 阿魯, 乾隆 2年(1737) 11月 13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sizing temgetulehe hūwangdi cohotoi hese wasimbufi dangse faksalaha ujiha jui be baicaburengge cohome meni meni da sekiyen be getukelefi habšan duilen be nakabure baita be mayambure jalin.”(“世宗憲황제(옹정제)의 특별한 유지에서 開戶의 양자를 조사한 것은 특별히 각자의 근원을 분별하여 향후 소송을 막아 일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이다.”)

\*同治二年, 郎宗盛佐領下在京眷口冊<sup>15)</sup>

Ex1)			一戶
		妻	騎都尉加一
二名口	妻	那氏	雲騎尉佐領
			郎宗盛
	年24歲		食俸餉五年
			年26歲
			父 祖
			故
			佐領 參領
			菩薩保 恒齡

Ex2)			族長
		佐領	(如有兼職)
		名字	領催 騎校
		(印章)	名字 名字
騎校			(印章)
名字			
(印章)			

이상 郎宗盛 佐領의 호구책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호구는 바로 좌령 郎宗盛 호구이다. 호구책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호구의 가구 수, 호주의 직책, 봉록, 호주와 구성원의 나이, 그리고 호주의 부모의 직책과 이름 등 비교적 많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구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본 호구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증하는 사람과 그들의 인장이 찍혀있다. 이 중 족장도 팔기 관료와 함께 호구 조사의 실무자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인장을 찍었다. 만약 족장에게 직책이 있는 경우 족장의 직책도 적었다. 족장이 보고한 戶口冊은 좌령을 거쳐 해당기의 팔기 아문에 보고되었고 팔기 아문은 이것을 필사하여 병부와 관할 좌령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좌령에 보관된 호구책은 새로 등록된 호구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말 좌령과 족장이 서로의 호구책 내용을 살펴 대조하였다. 만약 戶口冊을 유실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 받았다. 이처럼 족장이 조사하여 보고한 戶口冊과 족보는 족장뿐만 아니라 本旗의 아문, 중앙부처인 兵部에도 보관되는 등 국가의 檔案이 되어 기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sup>16)</sup>

15) 『清代譜牒檔案』縮微號:B062, 「郎宗盛佐領下在京眷口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16) (乾隆), 『欽定大清會典則例』卷175, 「八旗都統」, 「授官」.

戶口冊이 니루에서부터 중앙 부처까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주인이 호구책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족장의 보증을 받아 팔기 아문에 보고한 후 진위 여부를 검증받아야 했다. 다음은 족장이 호구책에 누락된 족인을 추가하기 위해 족보를 보내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이다.

이전에 정해진 규정을 찾아보니 팔기(기인)가 사사로이 출기하여 民인이 된 자는 만약 그 근원이 불분명하고 旗와 民 양쪽에서 고증할 사람이 없으면 민적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張有의 아버지 牛喜斌은 당시 족장(牛世秀)이 보고하지 않아서 丁冊에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족장 黑格이 보증한 족보를 가져와 부에 자문하여 조사한 것에 따르면, 張有의 아버지 牛喜斌은 옹정연간 丁冊에 기록된 적 없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본부와 해당 기에서도 모두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족장 黑格이 수결하여 보고한 지금 만든 족보 한 장만으로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黑格의 (원래)족보에도 牛喜斌과 張有의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보증한 족보가 도착하면 내무부에 돌려보내 조사한 후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張有가 진짜 기인이라면 여기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여 누락된 연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접 내용이 명백하다. 좋다.<sup>17)</sup>

嘉慶 8年(1803) 족장 黑格은 張有를 丁冊에 포함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옹정제 시기 족장이었던 牛世秀가 牛喜斌을 丁冊에서 누락하였고, 그 후 수십 년간 내무부, 호부 해당 기에 모두 증거가 없었어 그가 기인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에 호부는 추가로 기존에 수결하여 팔기 아문에 제출했던 족보를 가져와 대조하게 하였다. 본 사안이 시사하는 것은 족장의 戶口冊 편찬 및 보고는 팔기의 주요 업무일 뿐만 아니라 개별 기인의 권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일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족장이 자신의 호구를 누락하면, 훗날 이를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기인의 신분을 얻지 못하면 팔기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족장은 족인의 戶口 등재 권한을 이용해 족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 일부 만주족장의 사례에서 족장이 戶口 등

17) 檔號:05-13-002-000520-0035, 「為正白旗常申佐領下閑散長有遺漏丁冊咨送族長黑格結報及現造家譜抄單事致內務府等」, 戶部, 嘉慶八年(1803) 二月, 中國第一歷史檔案館: “因前來查定例, 八旗私出為民人等, 如根底不清, 旗民兩無可考者, 即行壯入民籍等語. …… 長有之父牛喜斌, 因該族長並未結報, 是以尚未入過丁冊, 取具族長黑格結家譜咨部查辦等語, 查長有之父牛喜斌, 即於雍正年間並未入冊, 迄今數十年本部該旗均無案據何查, 茲僅據族長黑格結報及現造家譜一紙均難為憑, 且查黑格家譜內亦無牛喜斌及長有名字, 所有送到甘結家譜, 應發還內務府查照辦理, 如長有寔系旗人, 此外另有確寔根據, 亦應由該旗自行查明遺漏緣由. 奏明可也.”

재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로 족인의 호구를 조작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폐단도 존재하였다.<sup>18)</sup>

## 2. 世職族譜 편찬 및 보증

만주인은 선대의 공적에 따라 각종 팔기의 世職을 세습할 수 있었다. 팔기世職에 출결이 생기면 해당 宗族의 족장은 세직을 이어받을 후보를 선정한 후 世職 族譜를 작성해 좌령에게 제출해야 했다. 기인의 世系가 방대해지면서 世職 자리를 두고 종족 내 분쟁이 첨예해졌다. 일부 종족은 심지어 거짓으로 족보를 꾸며 본래 계승권이 없는 족인이 世職을 받게 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조는 世職族譜 작성 규정을 강화하여 팔기世職 계승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하였다.

### 주접한 것

양백 한군기의 부도통 겸 王府長史 신 보디(bodi, 博第) 삼가 주접하였습니다……신이 팔기 세습직을 세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세습직의 결이 나온 이후 비로소 참령, 니루의 좌령, 효기교, 小領催, 族長이 (그) 무쿤(종족)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족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보내온 족보는 기의 처에서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또(진위 여부를)보증하지 않고 그제서야 족보를 가져오면 오래되어서 누락되고 잘 못 기입된 것을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모든 세습 관직의 족보가 모두 이전에 보증하여 가져온 것이니 분명하게 대조해서 당안으로 만들고, 인장을 찍어서 기의 야문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합니다. 관직을 세습하는 일이 생기면 보내온 족보를 대조해서 조사하게 하고 또 상주문을 함께 보고하게 합니다. 만약 족보를 보낸 이후 태어나 마땅히 추가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말이 되면 관할 참령, 니루의 좌령, 효기교들, 각자의 족장, 무쿤의 사람들과 함께 추가하는데 적합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조사한 후, 보증하여 보내오면 인장을 찍은 족보에 추가하여 기입하게 해주십시오.

朱批: 주접한 것 아주 특별하다. 기의 대신들과 논의해서 주접해라.<sup>19)</sup>

18) 김준영, 앞의 논문, 69-71쪽.

19) 檔案 : 04-02-002-000201-0016, 無題, 漢軍鑲白旗副都統博第,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wesimburengge.

kubuhe šanggiyan i ujen coohai meiren i janggin bime faidan i da amban bodi gingguleme wesimburengge……, amban bi gūsai sirara hafasai hafan sirara emu baita be tuwaci, yaya sirara hafan i oron tucike manggi, teni jalan i janggin, nirui janggin, funde bošokū, ajige bošokū, mukūn i da mukūn urse de selgiyefi giyapu be gaimbi, benjihe giyapu gūsai bade umai acabume baicara temgetu akū bime nergin de teni giyapu gaici goidambime ede melebure tašarabure be akū obuci ojarahū, bahaci yaya sirara hafasai giyapu be gemu onggolo akdulame gaifi,

이상 보디(bodi, 博第)의 주점을 보면 기존에는 세습직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해당 종족에게 세습족보를 받아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디는 부당한 자가 세습직을 차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세직족보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먼저 세직족보를 단순히 세습 후보자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보내온 족보에 인장을 찍어 국가의 공문서로 만들어 기인의 세직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세직족보를 보낼 때는 해당 족장을 비롯한 참령이하 니루의 관리들이 모두 세직족보의 진위 여부를 보증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같이 공문서화된 세직족보는 종족 내부에서 임의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새로 태어난 족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족장이 보증하여 보고 하면, 참령이하 니루의 관리들이 검토한 후 함께 보증하여 수정하였다. 만약 보증하여 보낸 세직족보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참령이하 니루의 관리는 물론 비정식 관원인 족장도 함께 처벌받게 하였다. 이후 만주인들은 변화된 규정에 따라 참령이하 팔기 관원 및 족장이 보증한 세직족보를 반드시 기의 아문에 제출해야 했다. 기의 아문에서는 이전에 제출한 세직족보와 대조하여 세습 대상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지금 운기위 밍루(minglu, 明祿) 세습 결의 세직족보에 많은 사람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8개 지파에서 총61명 모두가 처음 세습직을 받은 만두리(manduli)의 후손이 확실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족장, 무쿤의 사람들이 모두 보증하고 總管이 추가로 보증서를 보내온 것을 살펴보니 “이전에 밍루의 관직을 세습하는데 이같이 61명의 사람을 모두 누락하여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 男丁冊에 누락되어 (족보에)포함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밍루의 男丁 當안을 공문을 보내 가져와서 함께 조사해보니 족보에 빠뜨리고 포함시키지 않았던 자들이 男丁冊에 모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전 세습족보에서)전혀 빠트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해당 總管, 翼長, 족장이 모두 관할 관원입니다. 이전에 밍루가 관직을 세습하기 위해 (세습)족보를 편찬했을 때 61명을 빠뜨리고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전혀 상세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건

getukeleme acabufi dangse weilefi, doron gidafi gūsai yamun de asarabuki, hafan sirara baita bici, benjihe giyapu be acabume baicafi jai jedzy suwaliyame wesimbuki, aikabade giyapu benjihe amala banjilha nonggici acara ursei gebu be aniyai dubede isinaha manggi, harangga jalan janggin nirui janggin funde bošokū se meni meni mukūn i da mukūn i ursei emgi nonggici acara niyalma i gebu be getukeleme baicafi akdulafi benjihe manggi, doron gidaha giyapu i dangse de nonggime arabuki.

朱批 : wesimbuhengge umesi encu gūsai ambasa gisurefi wesimbu.”

룡)26년 처음 (세습)족보를 만들어 명루를 천거했던 전임 장군 칭보(cingboo)와 副都統 부안달라이(buyandalai)가 임직한 시기에 이같이 많은 사람들을 누락시킨 것을 전혀 조사하여 밝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그 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sup>20)</sup>

이상 성경 장군 舍圖肯의 주접을 보면, 팔기 세습직에 출결이 생겨 후보자에 대한 세직족보가 보고되면 이전 세습족보의 내용과 대조하여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乾隆 28年(1763), 본 족의 족장은 雲騎尉 명루(minglu, 明祿)의 결을 세습하기 위해 세직족보를 만들어 니루에 보고하였고 좌령의 보증을 거쳐 성경 장군에게 보고되었다. 장군 처에서는 본족이 보내온 새로운 세직족보를 乾隆 26年(1761) 명루가 雲騎尉의 작위를 세습할 당시 보내왔던 족보와 대조하였다. 장군 처에서 두 족보를 비교한 결과 이전 족보에는 8개의 지파 총61명의 사람을 누락시킨 것을 발견하였다. 본족은 누락된 자들은 戶口冊에 기록이 없어서 존재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였지만, 성경 장군 처에서 戶口冊의 내용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61명의 사람들 모두 戶口冊에 기록이 있어, 명루가 세습할 당시 족장이 보낸 세직족보는 실수가 아닌 족장이 의도를 가지고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대 팔기의 세직족보와 관련된 주접 중 명루의 사례와 같이 世系가 누락된 사실이 발각되어 보고되거나 자신의 世系가 누락되어 추가해 주기를 청하는 주접이 많았다. 즉 당시 만주족장들은 세직족보를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종족의 世系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족의 족보 편찬 이유는 종족 내부 혈연관계를 확인하여 종족 내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또한 민인 종족은 종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때로는 종족 관계가 불분명한 자들도 족보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부로 족인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만주종족의 족보는 종족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문서가 아닌 세습직 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일부 만주족장은 세직족보를 작성하고 보증할 때 종족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족인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폐단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만주족장의 세직족보의 진위를 보증하고 이를 팔기에 보고하는 임무는 족인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20) 檔號 : 03-0181-2088-009, 「奏將昭陵正黃旗額爾達色佐領下雲騎尉明祿家譜中漏寫之人補上折」, 盛京將軍 舍圖肯, 乾隆 29年 5月 18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이 임무는 동시에 만주족장이 족인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 3. 족인의 錢糧 및 旗地 관리

일반적으로 만주인의 정기적인 수입은 관원이 되어 받는 봉록, 팔기의 官兵이 되어 받는 전량 그리고 기인들에게 배분된 旗地의 田租이다. 입관 후 다수의 만주인은 자신들의 旗地를 민인이나 다른 기인에게 典當 잡혀 사실상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일부 상층 만주인을 제외하면 대다수 만주인은 팔기의 명액을 얻어 피갑으로 복역하면서 지급되는 전량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였다. 본고에서는 전량이 기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 중 만주족장의 역할을 통해 종족 내 만주족장의 경제적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백 만주기 부도통 신 나민(namin, 那敏)이 삼가 주접하였습니다……(신이)조사 하였는데 병들이 받는데 적합한 쌀의 수량은 원래 모두 넉넉하게 고려해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절약하여 생활하면 쌀이 낭비되지 않고 설사 식구가 많은 집안이라 할 지라도 또한 반드시 곤궁하여 어려움에 이르는 바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 이후 매 시기마다 쌀을 수령할 때 니루의 좌령들에게 명하여 각 족장, 직계 족장들에게 엄격하게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兵丁들이 수령할 쌀은 사람 수에 맞게 지급되도록 계산하게 합니다. 또 잉여분은 팔기 못하게 합니다. 잉여분을 각 어전에게 알리고 파는 것을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족장, 직계 족장에게 보증 받고 니루의 좌령에게 이유를 보고하게 합니다. 또한 (쌀을)팔게 하더라도 兵丁이 쌀이 부족해서 이자를 주고 빚을 져서 비싼 가격에 사는데 이르지 않게 합니다.<sup>21)</sup>

이상 나민(namin, 那敏)이 주접한 내용은 팔기 병정에게 지급될 쌀을 족장이 직접 관리하여 배분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주인들이 사적으로 잉여분의 쌀을 파는 것을 막아 훗날 쌀이 부족해 비싼 이자를 주고 사 먹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21) 檔號:04-02-002-000192-0037, 無題, , 正白旗滿洲副都統 那敏, ,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gulu šanggijyan i manju gūsai meiren i janggin aha namin i gingguleme wesimburengge……  
baicaci, coohai ursei gaiçi acara belei ton, daci gemu elgiyen tumin i bodome toktobuhabi,  
unenggi kemneme malhūšame banjime, balai mangiyarakū oci, udu anggala labdu boo seme,  
inu ainaha seme mohoro gacilabure de isinara ba akū, aha mini mentuhun i gūnin de, ereci  
amasi forgon dari bele gaire de, nirui janggin sede afabufi, meni meni mukūn i da, falga i dasa  
de ciralame nikebufi, coohai ursei gaiha bele be anggala de teisulebume sirabure ba bodome  
funcubufi uncaburakū, fulungge be meni meni ejen de afabufi, uncaki sere niyalma bici, mukūn  
i da falga i da se akdulafi, nirui janggin de turgun be alafi jai uncabure ohode, coohai urse bele  
lakcafi madagan bume juwen gaire, mangga hūda de udarade isinarakū.

위함이였다. 전량이 대다수 기인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족장의 전량 수취 및 분배권은 족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이 되었다. 가령 일부 족장은 이 권한을 이용해 족인의 전량을 강제로 탈취하는 폐단을 일으켰다. 예를 들면 雍正7年 昭陵總管 강미(江米)의 주접을 보면, 파보(faboo)와 얼거(elge)가 무쿤의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족장 겸 防禦인 보쥬(boojū)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심지어 족장 보쥬(boojū)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족인들이 받아야 할 전량에서 이자를 선 공제한 후 파보(faboo)와 얼거(elge)에게 지급하는 폐단을 일으켰다.<sup>22)</sup> 이 밖에 족장이 족인의 戶口를 누락시켜 니루에서 명액을 얻지 못하게 하였고 또 족인에게 응당 지급해야 할 전량도 지급하지 않아 골육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사건도 있었다. 건륭 50년 이미 혁직된 烏槍護軍 趕生이 칼로 그의 堂弟이자 족장인 明玉을 살해하였다. 趕生은 만주양백기 良太좌령소속으로 44세 이전에는 烏槍護軍 이었다. 당시 趕生의 큰아버지인 常太가 족장이었다. 그는 趕生 집안의 戶口를 누락시켜 趕生의 아들 阿金太가 니루에서 양육병으로 선발되지 못하게 하였다. 건륭 37년 趕生은 이 문제를 提督衙門에 보고하자 족장 常太는 趕生에게 병이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趕生이 호군에서 혁직되게 하였다. 이후 常太가 죽고 그의 아들인 明玉이 족장이 되었고 趕生은 생계가 어려워지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그간의 전량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족장 明玉은 趕生의 요청을 거절하고 양육병에 있는 아들의 전량도 지급하지 않았다. 趕生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족장 明玉을 살해하게 되었다.<sup>23)</sup> 이 밖에 세습직이 있는 만주인이 후손 없이 사망

22) 檔號:04-02-002-000153-0034, 無題, 昭陵總管江米, 雍正7年(1729) 6月 1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wesimburengge.

el dengge munggan i uheri da aha giyangmi sei gingguleme wesimburengge……

aha be bašing i mukūn i urse be gajifi, ere habšaha baita i yargiyan tašan i babe fonjici, bašing i mukūn i janggin i jergi de yabure, bayendai sei gūsin nadanniyalma i jabunde faboo amba madagan menggun juwen sindahangge yargiyan, meniciyanliyang be, mukūn i da tuwašara hafan i jergi janggin boojū, janggin ijergi de yabure hedzi, ese juwe niyalma tefufi, faboo, elge de buhebi, seme emu songkoi jabumbi……; boojū hedzi mukūn i da bime mukūn i dorgi de ere gese ehe facuhūn yabure urse bici, giyan i uthai tucibuci acambihe, sambime gaidafi tucibuhekū, elemangga faboo, elge emu ici ofi, yabuhangge ambula facuhūn ubiyada, aha be bahaci, ere gese ehe facuhūn yabure urse be, harangga jurgan de afabufi, ciralame beidefi, ujeleme weile arabuki sembi, erei jalin gingguleme wesimbuhe, hese be baimbi.

朱批:jiyanggiyūn harangga jurgan iemgi acafi ciralame beidefi gisurefi wesimbu.

23) 檔號:03-1234-019, 「奏報拿獲已革鑲白旗烏槍護軍殺死族長之趕生事」, 步軍統領 和珅, 乾隆50年(1785) 11月 5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正藍旗滿洲委署步軍校四各, 拿獲已革烏槍護軍趕生持刀割傷伊堂弟族長明玉身死. 將趕生解送前來臣詳加審訊, 據趕生共: “我系鑲白旗滿洲良太佐領下人, 從前當烏槍護軍年四十四歲前, 因我伯父常太當

하여 세습결이 다른 족인에게 세습되었을 경우, 해당 족장이 본래 세습직을 갖고 있던 자의 부인에게 원래 세직에서 지급받는 봉록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였다.<sup>24)</sup> 이상 사례에 나타난 공통점은 족인은 팔기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선 족장의 협조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입관 초 만주인은 旗地를 받았고 旗地의 田租는 기인의 고정수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수많은 만주인들이 목전의 이익에 매몰되어 항구적인 재산인 旗地를 헐값에 매매하거나 典當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고정 수입이 줄어든 만주인은 점차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옹정제는 기인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주인이 본래 소유하던 旗地를 되찾아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기인에게 다시 돌아온 토지는 각 기의 팔기 관원과 족장이 관리하여 사적으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였다.<sup>25)</sup> 그러나 만주인이 旗地를 잃고 빈곤해지는 문제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건륭제는 빈곤해진 기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官地를 만주인에게 팔아 항구적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청조는 니루마다 약 10경의 관지를 나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조는 官地 구매 대상의 선정을 위해 각 니루에서 족장들에게 만주인들의 재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족장이 족인의 재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여 보증하는 내용을 좌령에게 보고하면, 좌령은 족장이 보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領催, 효기교와 함께 참령에게 보고했고 참령은 기의 아문에 보고하였다. 당시 만주인이 구매할 수 있는 官地의 규모는 관원은 5경, 兵丁은 2경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고 구매의 우선순위를 兵丁에게 부여하여 생활이 곤궁한 만주인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sup>26)</sup> 청조가 官地를 가난한 官兵이 구매

族長，常太隱瞞我家口，更該我兒子阿金太歲數不能挑養育兵，我於乾隆三十七年，在提督衙門控告，當蒙將我送回本旗辦理，常太同佐領說我有瘋病，將我烏槍護軍革退，交家內看守，是年十一月，本旗將我大兒子阿金太挑補養育兵，四十二年，又將我二兒子畝神保挑了養育兵，後來族長常太病故，常太的兒子護軍明玉補放族長，佐領良太病故，良太的兒子鳳住襲職。我求他們給我本身辦一分錢糧養家，他們總不肯辦，本月初三日，我到佐領家給我兒子阿金太，畝神保關錢糧去適，我堂弟族長明玉也在那裏，關錢糧我原說兩分養育兵錢糧，不夠養家，求他給我，在佐領處討一分錢糧他不應允，我說你父親從前無故報我瘋病，革我錢糧，還要合你不依呢？他聽了這話就要回佐領去，我一時生氣，隨拔身帶小刀，將明玉胸膛上紮了以下，當即身死。”隨有官人將我拿獲等語。查趕生因革退錢糧，不敷養贍洩伊堂弟族長明玉向佐領處求討時，差使因明玉不允該犯，即用刀將明玉紮傷身死，實屬兇橫，其中或另有謀故別情，亦未可定，必須詳審明確，方成信讞相應，請旨。將趕生交刑部，驗明明玉屍傷倒辦理為此謹奏請。乾隆五十年十一月初五日，奉旨。交刑部，欽此。

24) (乾隆)『欽定大清會典則例』卷176, 「八旗都統」, 「優恤」: “雍正2年覆準。無嗣之世爵與族人承襲者, 原有分給俸銀養贍之例, 但年久或不分給, 亦未可定。嗣後, 此等襲爵之人, 著該參領, 佐領及族長等, 將俸餉三分之中分出一分, 養贍本家之寡婦, 其原管佐領及世管佐領一族中, 輪流承襲者毋庸分給。”

25) 檔號:04-02-002-000199-0004, 無題, 蒙古鑲黃旗副都統兼刑部良中武格,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할 수 있도록 했던 이유는 만주인들이 토지의 田租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건륭제 시기 官地를 기인에게 매매한 정책의 시행 절차에서 주목할 부분은 官地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족장의 보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즉 본 정책의 수혜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족장이 중대한 영향력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건륭 5년 領侍衛內大臣 하다하(hadaha, 哈達哈)의 주장을 보면, 족장의 토지 관리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모든 토지를 팔거나 전당을 주는 일은 모두 각 니루의 좌령, 효기교, 領催, 族長 등이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만약 그들이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팔거나 전당잡힌 일이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지금 각 관할 니루의 좌령들에게 엄히 명하였기 때문에 불초한 자들이 경성에서 토지를 전당하거나 파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간계를 부려 혹은 구실을 찾아 스스로 村莊에 가서 사사로이 토지를 팔거나 전당하였고....<sup>27)</sup>

만주인이 旗地를 매매하거나 전당하기 위해선 족장, 니루의 좌령, 효기교 領催 등의 보증을 받아야 했고 만약 만주인이 이들의 보증을 얻지 못하면 해당 거래는 공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만주족장은 사실상 족인의 토지 매매에 대한 허가권도 보유하여 족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4. 족인 紅白事 恩賞銀 관리

고금을 막론하고 일반 가정에서 경조사는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한 집안 행사였다. 입관 후 만주인들은 점차 사치스러운 풍속에 젖어들었고 경조사에 은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旗地를 매매하게 되거나 典當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청조는 만주인들이 경조사로 인하여 일시에 곤궁함에 빠지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紅白事 恩賞銀 제

26) 檔號:04-02-002-000238-0001, 無題, 監察禦史白起圖, 乾隆 4年(1739) 11月 16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27) 檔號 : 04-02-002-000244-0016, 無題, 滿洲鑲紅旗都統兼領侍衛內大臣 哈達哈, 乾隆 五年(1740) 7月 21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amban be kimcime gūnici, eiten usin be uncara, diyanlarangge, gemu meni meni nirui janggin, funde bošokū, bošokū, mukūn i da se akdulara bithe tucibumbi, ce aika akdulara bithe tuciburakū oci, uncara diyanlara baita ainaha seme šanggabume muterakū, ere jergi babe ne meni meni harangga kadalara nirui janggin sede ciralame afabuha be dahame, ede dursukiakū urse ging hecen de usin diyanlara uncara hacin yabume banjinarakū be safi.faksi arga be deribufi, embici kanagan baifi ini beye tokso de geneffi cisui usin be uncara diyanlara...

도를 만들어 필요한 은자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주접한 것.

팔기도통, 부도통, 和碩裕親王 보타이(bootai, 保泰) 등 삼가 주접하였습니다. 유지를 삼가 따르기 위함입니다……신들이 만나서 논의한 것은 팔기의 호군교, 효기교, 전봉, 호군, 領催 등은喜事에 10량, 喪事에 20량을 받게 해주십시오. 馬甲은喜事에 6량, 喪事에 10량을 받게 해주십시오. 보갑 및 1량을 받는 拜唐阿 등은喜事에 4량 喪事에 8량을 받게 해주십시오……喜喪의 일에 모두 각 족장 이상 참령 이하가 면밀히 조사한 후, (그 사실을)보증하여 보고하고, 해당기의 대신들에게 (恩賞銀)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인장을 받아 내무부에 가서 은전을 수령하게 합니다. 니루의 좌령 효기교 족장을 거쳐 당사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거짓으로 속이는 폐단 등이 조사하여 드러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고발하면, (그 일을) 보증하였던 니루의 좌령, 효기교, 小領催, 족장 등을 엄히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朱批 : 은혜를 속여서 얻은 자의 무쿤 사람들을 함께 영원히 恩賞을 받지 못하게 하라. 무쿤의 사람들이 사정을 밝히면 관련 없게 하라.<sup>28)</sup>

이상 和碩裕親王 보타이(bootai, 保泰)의 주접에 따라 雍正元年(1723) 청조는 紅白事に 만주인들이 곤궁함에 빠지지 않도록 팔기 내부의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恩賞銀을 지급하였다.<sup>29)</sup> 恩賞銀은 喪事に喜事보다 약 2배 많은 은자를 지급하여 망자의 마지막 길이 험스럽지 않게 하였다. 紅白事 恩賞銀의 지급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28) 檔號 : 04-02-002-000090-0021, 無題, 和碩裕親王保泰, 雍正元年(1723)七月二十六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wesimburengge,

jakūn gūsai gūsa be kadalara amban, meiren i janggin, hošoi elgiyen cin wang amban bootai sei gingguleme wesimburengge, dergi hese be gingguleme dahara jalin……, amban meni acafi gisurehengge, jakūn gūsai juwan i da, funde boxokū, gabsihyan, bayara, bošokū sede urgun i baita de juwan yan, jobolon i baita de orin yan obuki, uksin sede urgun i baita de ninggun yan, jobolon i baita de juwan juwe yan obuki, yafagan uksin emu yan jetere baitangga sede urgun baita de duin yan jobolon i baita de jakūn yan obuki……, urgun jobolon i baita de gemu meni meni mukūn i da ci wesihun jalan i janggin ci fusihūn, kimcime getukeleme baicafi akdulafi alibuha manggi, harangga gūsai ambasa buci acarangge be doron gidafi, dorgi baita be uheri kadalara yamun de yabufi kesi isibure menggun be gaifi nirui janggin, funde bošokū, mukūn i da se de afabufi beyede nikebume buki, aikabade holtoro eiterere jemden jergi baitabici, eici baicame tucibure eici hetu niyalma gercilere ohode akdulaha nirui janggin, funde bošokū, ajige bošokū, mukūn i da sebe jurgan de benifi isebume ujeleme weile arabuki.

朱批 : kesi be eiterehe niyalma i mukūn i urse be suwaliyame enteheme kesi šang bahaburakū obuki, mukūn i urse turgunbe tucibuci dalji akū obuki.

29) (乾隆)『欽定大清會典則例』卷176, 「八旗都統」, 「優恤」.

족인은 紅白事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먼저 족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족장은 족인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한 후 보증한 문서를 좌령에게 보고했다. 좌령은 이후 참령에게, 참령은 팔기의 대신에게 보증하는 문서를 보내 恩賞銀을 신청하였다. 恩賞銀 지급이 확정되면 니루의 좌령, 효기교 그리고 족장을 거쳐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다. 즉 만주족장은 족인의 恩賞銀 신청과 수령 과정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만주인은 집안의 紅白事に 팔기에게 지급되는 恩賞銀을 믿고 청조 통치자의 의도와 달리 여전히 과도하게 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이에 만주인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紅白事를 거행하는 날을 족장에게 보고하게 하였고 족장과 領催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게 하였다.<sup>30)</sup> 따라서 청조의 통치자가 시행한 恩賞銀 지급제도는 한편으로 만주인의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족장의 감독권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청조가 만주인에게 지급한 紅白事 恩賞銀은 팔기 내부의 계급에 따라 지급 수량에 차등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 및 계층에 따라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청조는 正身과 另戶에 속한 만주인들만 紅白事に 恩賞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관품이 높은 자의 자제, 개호 기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관품이 높은 관원의 후손이라고 하여 모두 유복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부 관원의 후손들은 생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紅白事 恩賞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청조는 紅白事 恩賞銀의 지급대상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족장에게 족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恩賞銀이 필요한 자를 니루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開戶 중 입관 전 귀의한 舊人을 조사하여 另戶가 되게 하였고 이들도 恩賞銀을 지급받는 대상에 포함시켰다.<sup>31)</sup> 乾隆 5年(1740)에는 이상 응정제 시기의 논의를 기반으로 紅白事 恩賞銀을 수령하는 대상에 대한 세부규정을 수립하였다.

(건륭)5년 주접한 것을 허락하였다……혁직된 6품 이하의 관원과 혁직된 5품 이상의 관원이 후사가 없이 죽거나 어린 자식만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효기교의 규정으로 恩賞銀을 지급한다. 또 사직하고 물러난 호군교이하의 관원과 병정의 처는 남편이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만약 자손이 관직에 있으면 자식이 받는 전량에 따라 恩賞

30) 檔號：04-02-002-000192-0030, 無題, 滿洲正白旗副都統 哲爾袞,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31) 檔號：04-02-002-000191-0031, 無題, 蒙古正藍旗都統 莽鵠立,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銀을 지급한다. 만약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어려 아직 관직에 나가지 않은 자는 재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여 퇴직 관원의 처는 남편의 원래 품급으로, 혁직된 관원의 처는 효기교의 규정으로 지급한다. 퇴직한 병정의 처는 남편의 본래 전량을 기준으로 恩賞銀을 지급하고, 혁직된 병정의 처는 보군의 규정으로 恩賞銀을 지급한다. 후사가 없는 과부가 병으로 사망하면 관례대로 상주의 직급에 따라 恩賞銀을 지급한다. 다만 친족이 없는 과부나 친족이 한산기인인 자는 아직 세분하여 정하지 않았다. 이후 과부가 사망했는데 만약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한산기인인 자는 관원의 처는 領催의 규정으로 병정의 처는 남편의 원래 전량을 기준으로, 한산기인의 처는 보군의 규정으로 恩賞銀을 지급한다. 만약 상주가 없으면 좌령이나 委領催 한 사람에게 명하여 맡게 한다. 또 병정의 紅白事에 만약 성 밖에 거주하는 屯居기인이면 좌령에게 보고 하는 날에 좌령과 족장의 보증서를 받으면서 즉시 恩賞銀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학교에 재학 중인 관학생은 5품 이상 관원의 자제는 恩賞銀을 받지 못하게 한 것 이외에 만약 그 부모가 재산이 없고 또 恩賞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2량의 전량을 받는 양육병의 규정으로 恩賞銀을 지급한다.<sup>32)</sup>

건륭제는 恩賞銀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또 규정을 세분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서雍正제 시기 正白旗副都統 哲爾袞의 주접 내용에서 보듯 동일 계층 내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획일적으로 지급 대상을 규정하면 지위가 높지만 가난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외 집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주 宗族의 규모가 확대되고 가족관계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각 상황에 맞춘 紅白事 恩賞銀의 수급대상과 수량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조는 팔기 내 계급, 퇴직 경위, 자식의 관직 여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 재산 소유 여부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 및 수량을 확정하였다. 예를 들어 5품 이상의 직이나 관원이 후사가 없이 죽거나 어린 자식만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효기교의 지급규정으로 恩賞銀을 지급하였다. 호군교 이하의 관원과 병정의 처는(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 만약

32) (乾隆)『欽定大清會典則例』卷176, 「八旗都統」, 「優恤」:(乾隆)五年(1740)奏準.……又革退六品以下等官與革退五品以上職官, 身故無嗣或有子幼小實無產業者, 準照驍騎例賞給, 又告休革退護軍校以下等官及兵丁之妻, 在夫前身故者, 如有子孫當差, 按子孫所食錢糧賞給, 如無子嗣或有子幼小尚未當差者, 察明果無產業, 告休官員之妻照其夫原品級, 革退官員之妻照驍騎例, 告退兵丁之妻照其夫原食錢糧, 革退兵丁之妻照步軍例賞給. 無嗣孀婦病故, 向例視承辦人職分得賞, 惟是並無親族之孀婦及親族系閑散者並未分晰定議. 嗣後, 孀婦身故, 如並無親族及有親族而系閑散者, 官員之妻照領催例, 兵丁之妻照本夫錢糧, 閑散人之妻照步軍例賞給. 如無承辦之人, 該佐領, 委領催一人令其承辦. 再兵丁父母喪及娶妻嫁女, 如有在屯居住者, 於報到佐領之日, 一面取具該佐領, 族長等甘結, 一面即行賞給. 又部院衙門貼寫効力筆帖式婚喪事, 如所食錢糧在應得賞之列者, 均照例賞給, 其食一兩錢糧効力之筆帖式, 照食一兩錢糧執事人之例賞給. 在學肄業官學生除五品以上官員之子弟, 不準賞給外, 如無產業其父兄, 又不在得賞之列者, 照食二兩錢糧之教養兵例賞給.

자손이 관직에 있으면 자식이 받는 전량을 기준으로 恩賞銀을 지급하였고,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어려 아직 관직에 나가지 않은 자는 재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여 퇴직 관원의 처는 남편의 원래 품급으로, 혁직된 관원의 처는 효기교의 규정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본래 紅白事 恩賞銀은 기인의 집안에 紅白事가 있을 때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보조금이었다. 그러나 이상 건륭조시기 세분화된 규정에서 재산 유무 여부를 살펴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볼 때 이 제도는 만주인의 紅白事에 대한 특별 보조금의 성격에서 생활이 어려운 만주인을 구제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 5. 秀女선발 대상 관리 및 보고

청대 秀女 제도는 입관 후 황제의 후궁과 近支宗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한 제도였다. 수녀 제도는 順治 10年(1653) 처음 실시되어 3년에 한번 씩 시행되었다. 순치 연간 제정된 규정에 의하면 수녀로 선발되는 대상은 13~17세 사이의 만주, 몽고, 한군기에 소속된 팔기 관병의 여식이였다.<sup>33)</sup> 수녀 선발 과정은 먼저 수녀 선발 명단에 누락된 바가 없음을 참령, 좌령, 효기교, 領催가 함께 보증한 후 도통에게 보고하였다. 도통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증한 후 호부에 전달하였다. 호부에서는 황제의 의중을 살펴 수녀 선발 일시가 정해지면, 각 기에서는 이번 차수에 참가할 수녀의 명단을 구비하여 준비하였다. 수녀 선발 대상이 된 가족들은 神武門까지 여식을 호송한 후 입궁시키면 수녀 선발에 대한 기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만주인의 여식은 반드시 수녀 선발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수녀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혼례를 올릴 수 없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녀 선발 대상의 부모뿐만 아니라 참령 이하 족장까지 처벌받았다. 만약 수녀 선발 대상자에게 장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족장 및 니루의 관리들이 함께 보증하여 보고하게 하였다.<sup>34)</sup>

건륭제는 만주인들이 수녀 선발 대상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해 수녀의 명단에 팔기 관원들은 반드시 관할 족장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발 명단에서 수녀의 부모가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발각되면, 누락

33) 건륭 연간 이후 주방기인의 여식은 수녀선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경18년(1813) 이후에는 만주, 몽고의 호군 領催 이상의 여식만 수녀선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34) (乾隆)『欽定大清會典則例』卷172, 「八旗都統」, 「戶口」.

시킨 부모가 관원이면 혁직시키고 평민이면 형부에 보내 처벌받게 하였다. 만약 누락시킨 자가 좌령, 효기교, 領催와 같은 팔기 관원이면 좌령, 효기교는 심의한 후 감봉이나 강등형을 받았고 領催는 채찍형을 받았다. 만약 누락시킨 자가 족장이면, 족장의 관직 여부에 따라 관원이면 심의하여 감봉이나 강등형을 받았고 兵丁이면 채찍형을 받았다. 그리고 함께 보증한 좌령, 효기교는 심의 후 처벌, 領催는 채찍형을 받았다.<sup>35)</sup>

이상 수녀 선발 규정에서 선발 대상 관리의 1차 검증을 족장이 맡았고 이후 참령 이하 팔기 관원은 족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재차 확인한 후 함께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족장은 수녀선발에 필요한 명단과 이를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족인의 戶口冊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아이의 출생 상황 또한 조사하여 기록해야 했다. 아울러 족장의 수녀 선발 대상 관리 임무의 영향으로 만주인 족보에는 민인족보와 달리 보통 부계 世系만을 기록한 세시표에 여자아이의 출생까지 기록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만주족장은 팔기 男丁의 戶口冊 작성에서부터 수녀 선발 대상의 관리까지 모두 족장이 일선에서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이는 만주 공동체 구성원의 인적 조사 및 관리의 증대사를 족장이 일선에서 처리했음을 의미한다.

#### IV. 맺음말

이상 만주족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대 만주족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만주족장의 선발은 종족 내부의 자체적 결정이 아닌 좌령의 임명과 팔기 도통의 동의를 거치는 등 조정의 관리하에 있었다. 족장 선발 대상의 기준은 종족 내부의 혈연관계에 의한 尊長이 아닌 족인 중 관직이 높은 자였다. 만약 종족 내에 적합한 관원이 없으면 임시로 다른 종족의 사람을 족장에 임명 한 후, 본족에서 관원이 나오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인은 보통 관직에 나가기 전, 혹은 퇴직 후 족장을 맡았다는 점과 비교하면, 관직이 높은 자를 족장으로 임명 한 것은 만주족장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조 통치자가 만주족장의 관직

35) 위의 책.

경험을 중시한 이유는 족장이 니루에서 팔기 공적 임무의 실무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만주족장의 니루 관리는 기본적으로 관할 족인의 관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족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족장에게 족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였다. 청조는 족장 선발에서 관직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족인을 통솔할 수 있는 기본적 위신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청조는 족장에게 족인의 팔기 호적 등재 및 신분보증, 세직족보 작성 및 보고, 전량 혹은 旗地의 경제권 관리, 紅白事 恩賞銀 지급 관리 등의 임무를 맡겼다. 이러한 임무는 족장이 족인의 경제권을 장악하게 하여 족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이 되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 또한 수반되기 마련이다. 족장이 진심으로 족인을 교화시켜 만약 3년 동안 종족 중에 과오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조는 족장에게 紀錄 한 번을 하사하였다.<sup>36)</sup> 만약 紀錄을 받은 족장이 현직 관원이 아닐 경우 해당 紀錄을 기록하여 병부와 기의 처에 보관하게 하였고 훗날 그가 관원이 되면 紀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만약 관직에 오르기 전에 과오를 범해 紀錄을 사용할 일이 발생하면, 해당 紀錄을 사용해 감봉 6개월에 상응하는 죄를 상쇄할 수 있게 하였다.<sup>37)</sup> 반대로 족장이 교화에 힘쓰지 않아 족인이 니루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失察의 책임으로 사안에 따라 강등형에서 감봉형이 내려졌다. 족장이 관원인 경우 주로 강등형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채찍형이 내려졌다. 이처럼 만주족장은 정식 관원은 아니었지만 참령 이하 팔기 관원과 함께 니루 관리의 실무자로 직접 참여했다. 또한 니루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그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 했다. 따라서 만주족장은 족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失察의 책임으로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족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써야 했다.

36) 紀錄은 청대 관리에게 내리는 獎勵로 기록 4번으로 1級 승진할 수 있었다.

37) (乾隆)『欽定大清會典則例』卷117, 「兵部」, 「職方清吏司」, 「公式二」.

## 참고문헌

### 1. 자료

『清高宗實錄』

『清代譜牒檔案』,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欽定大清會典則例』

檔號:04-02-002-000194-0047, 無題, 戶部侍郎覺羅塞得,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179-0005, 無題, 滿洲鑲黃旗副都統吳禮, 雍正十二年(1734)8月20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3-0170-0028-007, 奏請選任族長張恢復舊例折, 寧古塔將軍鄂彌達, 乾隆六年(1741)12月11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119-0003, 「奏請嚴查開戶者之中認族居官協民之而入冊居官協納監生XX護軍者皆罷職事」, 正黃旗監察御史富色訥, 雍正3年1月12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3-0171-0206-016, 「奏請令防禦佛柱來京賞問家譜緣由折」, 寧夏將軍 阿魯, 乾隆二年(1737)11月13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5-13-002-000520-0035, 「為正白旗常申佐領下閑散長有遺漏丁冊咨送族長黑格結報及現造家譜抄單事致內務府等」, 戶部, 嘉慶八年(1803)二月,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案:04-02-002-000201-0016, 無題, 漢軍鑲白旗副都統博第,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3-0181-2088-009, 「奏將昭陵正黃旗額爾達色佐領下雲騎尉明祿家譜中漏寫之人補上折」, 盛京將軍舍圖肯, 乾隆29年5月18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192-0037, 無題, 正白旗滿洲副都統那敏,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153-0034, 無題, 昭陵總管江米, 雍正七年(1729)6月1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3-1234-019, 「奏報拿獲已革鑲白旗烏搶護軍殺死族長之趕生事」, 步軍統領和坤, 乾隆五十年(1785)11月5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199-0004, 無題, 蒙古鑲黃旗副都統兼刑部良中武格,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238-0001, 無題, 監察御史白起圖, 乾隆四年(1739)11月16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244-0016, 無題, 滿洲鑲紅旗都統兼領侍衛內大臣哈達哈, 乾隆五年(1740)7月21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090-0021, 無題, 和碩裕親王保泰, 雍正元年(1723)七月二十六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192-0030, 無題, 滿洲正白旗副都統哲爾袞,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檔號:04-02-002-000191-0031, 無題, 蒙古正藍旗都統莽鵠立, 雍正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 2. 저서

杜家驥, 2015, 『清代八旗官制與行政』,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_\_\_\_\_, 2016, 「清代滿族與八旗的關係及民族融合問題」, 『社會科學戰線』 6
- 謝肇華, 1993, 「從一份“家訓”看清後期滿族的族長制」, 『滿族研究』 1
- 徐凱, 2015, 『滿洲認同“法典”與部族雙重構建：十六世紀以來滿洲民族的历史嬗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徐雪梅, 2018, 「清朝八旗制度中的族長」, 『人民論壇』 2
- 孫靜, 2005, 「滿族形成的再思考——清中期滿洲認同意思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 王鐘翰, 1987, 「關於滿族形成中的幾個問題」, 『社會科學戰線』 1
- 張佳生, 2010, 「八旗牛錄建制與滿洲之民族整合」, 『瀋陽故宮博物院院刊』 10
- 趙志強, 2019, 「滿洲族稱源自部落名稱——基於「滿文原檔」的考察」, 『紀念鄭天挺先生誕辰120周年暨第五屆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會議』, 南開大學
- 馮爾康, 2008, 「清代宗族族長述論」, 『江海學刊』 5
- \_\_\_\_\_, 2012, 「清代宗族的社會屬性——反思20世紀的宗族社會批判論」, 『安徽史學』 2
- 何海龍, 2002, 「清代滿族民間宗法制度基本形態淺析」, 『滿族研究』 4
- 『民族問題五種叢書』 遼寧省編輯委員會, 2009(修訂版), 『滿族社會歷史調查』, 民族出版社
- 김준영, 2020, 「清朝의 종실족장선발과 족장의 종실사회 관리」, 『만주연구』 30
- 마크C.엘리엇(Mark C.Elliott), 이훈·김선민 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Mark C.Elliott, 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파멜라 크로스리(Pamel K.Crossley), 陳兆肆 譯, 2016, 董建中校 『孤軍：滿人一家三代與清帝國的終結(Orpha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 New Jersey)』, 人民出版社

투고일 : 2021년 03월 26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4월 0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4월 18일

■ Abstract ■

## Manchu Clan Leader Management of Niru in the Middle Qing Dynasty

Kim Junyo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Manchu communities operated increasingly on the periphery of the Eight Banners (administrative and military divisions under the Qing Dynasty), while the base social organizations coalesced around the Niru (牛錄), the basic unit of Eight Banners. Amid thes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the Niru held steadfast to maintaining a clan leader representing each Mukūn(穆昆)—including Zuoling (佐領)who headed Niru.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roles and activities of Manchu clan leaders after enrollment in the Eight Banners, such as worship ceremonies, property management, genealogical writings, and adoption management. However, because the Manchu are Bannerman belonging to the Eight Banners, the dearth of studies related to their connections to the Eight Banners beyond their clanship leader roles remain academically problematic. Even previous studies often fail to differentiate clan leadership of the Han people (漢人)from the Manchu who organized as part of the Eight Banners.

This paper used Qing Dynasty archiv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d Han clan leaders and Manchu clan leaders' public role in Niru. The results reveal that the Manchu clan leaders, unlike the Han, claimed appointment based on Qing Dynasty rules rather than through self-selection. The Qing Dynasty selected those at the highest clan positions as clan leaders. The Qing Dynasty valued the Manchu clan leader's experiences and their management official duties as part of the Eight Banners at Niru. These duties served as evidence of leadership skills even before appointment as authorized officers. The positions came with ties to economic benefits that the clan members could enjoy in Eight Banners.

Key words: Eight Banners, Niru, Clan, Manchu clan leader, the role of clan leader, economic rights of clan leader